

2019년

청년고용 우수기업
근로환경 개선사업

가이드 북

2019. 03.

목차

1. 사업개요
2. 프로세스
3. 지원대상
4. 지원 규모 및 내용
5. 기업 규모 및 대상업종
6. 우대기업 구분
7. 신청절차
8. 제출서류 목록
9. 제출서류 상세내용
10. 제외기업
11. 유의사항
12. 기업 체크 및 협약사항

「2019년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」

○ 사업개요

구분	내 용
지원대상	청년 신규채용 2명이상 포함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인천소재 중소기업
지원규모	30개사 내외(* 청년 채용인원 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) • 2인이상 ~ 3인이하 : 10백만원 이내 지원 • 5인이하 : 20백만원 이내 지원 • 10인이하 : 30백만원 이내 지원 • 10인초과 : 40백만원 이내 지원
지원내용	기업 근로환경개선 시설 개보수 비용 및 물품구입비용 지원
모집기간	수시모집 (공고일~ 예산 소진시까지)

○ 프로세스

모집 · 평가	1. 사업공고 (IBITP)	- 사업공고
	2. 참여신청서 제출 (신청기업)	-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 일체 제출 ※ bizok.incheon.go.kr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접수
	3. 평가 및 지원결정 (IBITP → 신청기업)	- 서류심사 (50%), 현장평가 (20%), 위원평가 (30%)
사업 수행	4. 선정공고 (IBITP)	- 선정기업은 결과 통보 후 사업계획서 및 결정사항에 의한 과제수행
지원금 지급	5. 비용환납 (선정기업)	- 총 소요금액 <기업이 우선 환납> ※ 계좌입금 규정준수 (현금 지출 불가)
	6. 지급신청서 제출 (선정기업)	- 지원금 신청서(지출증빙 포함) 등 관련서류 제출 - 현장확인 (IBITP)
	7. 지원금 지급 (IBITP → 신청기업)	- 검토 후 지원금 지급(기업체 계좌로 지급)

○ 지원대상 : 청년 신규채용(정규직) 인원이 2명 이상인 기업

구분	내 용
신 규 채 용	-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인천 거주 청년을 2명이상 채용한 실적이 있는 기업 • 신청일 이전 인정범위 (예시) : 신청일(2019.5.8.), 실적인정(2018.5.8.~2019.5.8.) • 청년 채용은 신청일 현재까지 재직 중에 있는 자이며, 주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상시근로자를 말함 • 중소기업의 경우 2명 이상, 중견기업의 경우 10명 초과 청년신규채용 • 4대 사회보험 가입자로 만 15세~39세 채용 실적 인정. * 만15세~만39세 (1979. 1. 1. ~ 2003. 12. 31. 범위에 출생한 자로 한정) • 신청일 현재 재직중이어야 함. ※ 신청기업 대표 및 임원과 직·간접적으로 연계되어있는 친인척 관계(직계 존비속, 형제 ,자매 등)에 해당하는 청년은 채용실적에서 제외 • 임차건물의 경우 물품만 지원 가능.
소 재 지	- (기업) 주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인 기업 (신청일 현재) - (청년)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인천인 청년(신청일 현재) •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여부 확인 • 신규채용청년은 신청 후 6개월간 관외 주소지 이전이 없어야 함.
기업 규모	-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이며, 최근 1년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기업(1년간 평균) - 중견기업의 경우 청년 10명 초과 채용시 지원 가능

○ 지원 규모 및 내용 : 청년 채용인원 기준에 따라 차등지원

구분	내 용	
지 원 규 모	- 청년 신규채용 인원기준	
	청년신규채용인원	지원금액
	2인이상 ~ 3인이하	10백만원 이내 지원
	5인이하	20백만원 이내 지원
	10인이하	30백만원 이내 지원
	10인초과	40백만원 이내 지원

- 전액지원(※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기준이며, 지원금 외 추가비용은 기업체 부담)

구분	내 용
시설개보수 지원	· 화장실, 휴게실, 샤워실, 탈의실, 집진·공조시설
물품구입 지원	· 작업현장용 물품 : 냉난방기, 공기청정기
	· 휴게실 물품 : 냉난방기, 안마기기, 옷장(락커), 공기청정기

세부사항

- ▶ 지원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기준이며, 지원금 외 추가 비용은 기업부담
- ▶ 시설 개보수 및 물품구입 지원이 병행하여 진행 될 경우, 총 지원금에서 **물품구입 비용은 50%를 초과 할 수 없음.**
- ▶ 시설 개보수 지원 시 신축은 불가하며 인테리어 및 증·개축은 지원 가능함.
- ▶ 부지 및 건물 매입비, 기존 시설 매입비, 임차료, 이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.
- ▶ 제조 작업현장 및 직원 휴게실만 신청 가능하며, 사무공간은 신청불가
- ▶ 안마기기는 1개당 최대 1,500천원까지 지원(초과금액은 기업부담)

○ 기업 규모 및 대상업종 : 제조업

구분	내 용
제조업	〈공장등록기업〉 공장등록증명원 사본제출 〈공장 미등록 제조기업〉 제조시설 면적이 500m ² 미만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으로 증빙 가능. * 건축물 관리대상상 공장 또는 제조소로 표기되어야 함. * 실제 제품 제조 공정이 있어야 하며, 현장평가 진행시 기업의 주된 사업이 제조업을 영위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.
	가타 〈임대건물〉 물품만 지원가능 (임대차계약서 제출)

○ 우대기업 구분

우대지원 대상	
참여기업 가점사항	·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(중앙 및 인천시) ·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
	· 청년친화기업, 가족친화 기업 · 희망이음 참여기업
	·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기업 · 1석5조 청년프로젝트 참여기업
	· 인천시 청년인턴십 참여기업 · 뿌리경력형성장지원금 참여기업

-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항일 시 각각의 범위 인정 (※ 유효기간 內)
- 각 해당사항 증명자료 제출시 가산점 부여
(- 3개 이상 해당 : 5점, - 2개 이상 해당 : 4점, - 1개 이상 해당 : 3점)

○ 신청절차

1. 홈페이지 접속	- 홈페이지 : bizok.incheon.go.kr
2.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	- 파일 업로드 및 정보입력
3. 온라인 신청	- 서류 업로드 · 참여신청 및 계획서 · 신규채용청년 현황 · 기업 요약사항 · 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, 청렴이행 협약 등 동의서(기업체) · 청년 고용창출 증빙서류 · 견적서 및 관련 증빙서류 · 사업자등록증 및 제조업증빙서류 등 · 4대 사회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 · 국제지방세 완납증명서 · 지자체 수상실적 및 인증기업 등(증명서류 제출 - 가점사항) · 그 외 신청 내용 별 접수기간 요청서류
4. 서류보완/재신청	- 담당자 안내에 따른 보완서류 업로드, (3일 초과시 전체 재신청)
5. 지원결정/통보	- 서류심사 → 현장평가 → 위원평가 후 결정사항 개별통보

○ 제출서류 목록

No	제출서류
1	「2019년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」 참여 신청 및 계획서 「서식1」
2	「2019년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」 신규채용청년 현황 「서식2」
3	「2019년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」 기업 요약사항 「서식3」
4	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, 청렴이행 협약 등 동의서(기업체) 「서식4」
5	청년 고용창출 증빙서류 ① 근로계약서 ②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사실확인서(청년) 「서식5」 ③ 주민등록등본 (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)
6	견적서 및 관련 증빙서류 ① 시설 개보수 :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, 세부내역 (단가계산 산출내역 및 설계도면 등) * 15백만원(VAT제외) 이상 공사는 시공업체의 해당 업종 면허증 사본 제출필수 ② 물품구입 :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, 카탈로그 등 * 시설 개보수 및 물품구입 동시 지원할 시 위의 모든 사항을 충족
7	사업자등록증 및 제조업증빙서류 등 ① 사업자등록증 ② 공장등록증명서 (공장 미등록시 건축물관리대장 사본 제출)
8	4대 사회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 (신청일 이전 1년 기준, 2019년 01월 02일 기준, 2018년 5월 8일 기준 각 1부) 예시 : 신청일이 2019년 05월 08일인 경우 ① 2019년 5월 8일 기준 4대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각 1부 ② 2019년 1월 2일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③ 2018년 5월 8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* 신청일 7일 이내 발급분
9	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 지자체 수상실적 및 인증기업 등 (증명서류 제출 - 가점사항)
9	(※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항은 유효기간 내 한하여 인정하며, 각 해당사항 증명자료 제출시에만 가산점 부여)
7	그 외 신청 내용 별 접수기간 요청서류 - 제출서류는 반환 불가하며, 제출서류 이외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. - 국 세 :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(www.hometax.go.kr)에서 발급 가능 - 지방세 및 주민등록등본 : 정무민원포탈 사이트(www.minwon.go.kr)에서 발급 가능 - 공장등록증명서 : 한국산업단지공단 팩토리온 사이트 (www.femis.go.kr)에서 발급 가능 -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 확인 대한전문건설업협회 www.kosca.or.kr 또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http://www.kiscon.net

○ 제출서류 상세내용

제출서류 상세내용	
1. 참여 신청 및 계획서	① 기업정보 및 지원자격 관련사항 확인. ②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유와 이에 따른 사업장 전반에 미치는 기대 효과 상세하게 기재 (필요시 칸 추가하여 작성, 페이지 수 제한 없음) ③ 공사와 물품을 구분하여 각각 계획하는 위치와 예상 소요기간 및 견적에 따른 소요금액 (VAT 제외한 공급가액) 기재 ④ 시설 개보수의 경우 단가계산 산출내역 및 설계도면 등 세부내역이 명시된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제출 (첨부된 견적서 양식을 준수하여 제출하며, 견적서와 비교견적서임을 표기) ⑤ 물품구입의 경우 물품 카탈로그 및 사진이 포함된 견적서, 비교견적서 각 1부 제출 ⑥ 약식도면은 시설 개보수 및 물품 설치 장소를 알아보기 위함으로, 평면도와 비슷한 형태로 약도화하여 제출 (간단한 수기작성 가능) ⑦ 시설개보수 및 물품설치 공간의 현장사진 첨부 ⑧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경우, 관련서류를 재요청 할 수 있음.
2. 신규채용청년 현황	① 신규채용청년의 주소지, 생년, 입사일 등 서식에 맞게 작성 ② 근속 여부를 확인하여 지난 6개월간 동일기업에 재취업 이력이 있는 청년은 실적 산정시 제외함. ③ 대표 및 임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청년은 실적 산정에서 제외함. ④ 신청일 현재 재직중이어야 하며 재직일수는 무관함. ⑤ 사업신청 전 청년의 퇴사로 채용실적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 신규채용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신청을 유보함. ⑥ 기업은 청년의 퇴사를 사업 담당자에게 즉시 알리고, 청년 신규채용이 이루어지면 일시적 유보되어 있는 선정과정을 재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함. ⑦ 신규 채용한 청년의 4대 사회보험 가입서류 및 근로 계약서를 제출하는 시점부터 재평가의 과정을 거쳐야 함. ⑧ 신규채용이 이루어지는 동안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받지 못 할 수 있음. ⑨ 선정이전 퇴사자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사업 담당자에게 알리지 않고 사업을 계속 진행한 것이 추후 밝혀졌을 경우 지원금의 반환을 청구함.
3. 기업 요약사항	① 각 문항에 맞는 확인 필수 ② 위 사항에 동의·협조·확약·확인하지 않을 시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
4. 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, 청렴이행 협약 등 동의서(기업체)	①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,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,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동의,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, 청렴 이행 및 사업참여 협약, 제외기업 해당여부 ② 위 사항에 동의·협조·확약·확인하지 않을 시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

5. 청년 고용창출 증빙 서류	① 근로계약서 ②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사실확인서(청년) ③ 주민등록등본(3개월 이내 발급본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블라인드처리)
6. 견적서 및 관련 증빙서류	① 시설 개보수 :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, 세부내역 (단기계산 산출내역 및 설계도면 등) * 15백만원(VAT제외) 이상 공사는 시공업체의 해당 업종 면허증 사본 제출필수 ② 물품구입 :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, 카탈로그 등 * 시설 개보수 및 물품구입 동시 지원할 시 위의 모든 사항을 충족
7.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명서 등	① 사업자등록증 ② 공장등록증명서 (공장 미 등록시 건축물관리대장 사본 제출)
8.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	① 신청일 기준 7일 이내의 4대보험 가입여부를 확인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블라인드처리) - 신청일 이전 1년 기준, 2019년 01월 02일 기준, 2018년 5월 8일 기준 각 1부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예시 : 신청일이 2019년 05월 08일인 경우 ① 2019년 5월 8일 기준 4대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각 1부 (연금, 건강, 고용, 산재) ② 2019년 1월 2일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③ 2018년 5월 8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</div>
9. 국세·지방세 완납 증명서	①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(www.hometax.go.kr)에서 발급 가능
10. 지자체 수상실적 및 인증기업 등 (증명 서류제출-가점사항) - 참여기업 가점사항 확인 (※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항은 유효기간 내 한하여 인정하며, 각 해당사항 증명자료 제출시에만 가산점 부여)	
11. 그 외 신청 내용 별 접수기간 요청서류	

○ 제외기업

-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
- 신청일 기준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
- 환경오염 부당노동행위, 불법행위, 민원야기 등 사회적 물의 기업
- 동종업체 대비 현저히 낮은 임금수준 등 심의위원 다수가 선정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업
- 임금체불, 근로계약서 작성, 부당 노동행위, 4대보험 등 기본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
-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및 유사한 지원을 받은지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업

- * 단, 지원받은 금액이 5백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경과된 기간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
-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 공사가 불필요한 경우
- 무허가 건물 등 건축법 상 허가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
- 기타, 운영기관에서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기업

○ 유의사항

-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, 동 사업 및 관리기관 기업지원 서비스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음.
- 동일·유사 사업으로 3년 이내 중복 지원을 받았을 경우 사업비 전액을 환수함.
* 단, 지원받은 금액이 5백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경과된 기간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
- 지원받은 기업은 향후 3년간 동일 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.
- 허위로 신청한 경우, 사업비 전액을 환수함.
- 신청기업 대표 및 임원과 직·간접적으로 연계되어있는 친인척 관계(직계 존비속, 형제, 자매 등)에 해당하는 청년은 채용실적에서 제외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.
 - 원칙적으로,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대상 자격 및 지원금 지출여부 판단
 - 신청한 모든 사업자가 지원받는 사업이 아니며,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지원
- 지원 선정 취소
 - 신청업체가 부도, 폐업,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
 - 위법·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
※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 사업 배제,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등에 통보
 - 지원결정 통보(일) 이전에 시행한 경우
 -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, 과제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
 -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 - 기타 판단에 의거 지원 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 및 포기
 - 변경시 사업변경신청서 제출 ※ 담당자의 사전 승인 필요
 - 변경시 비용이 상향되어도 결정된 지원금 이상으로 상향되지 않음.
 - 지원포기의 경우 지원사업포기신청서 제출
- 시공·제작업체 선정
 - 사업자 본인과 가족관계(직계존비속, 형제, 자매)에 해당하는 시공 및 물품구입 업체는 선정 불가
 - 전자 세금계산서 미대상은 수기 세금계산서와 기타 시공업체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.
 - 15백만원(VAT제외) 이상 공사는 반드시 건축공사업 또는 해당 공종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를 시공자로

<p>선정하여야 하며, 시공업체의 해당업종 면허증 사본(전기공사업 면허, 실내건설업 면허 등) 필수 제출 *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확인 전문건설업협회(www.kosca.or.kr)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(http://www.kiscon.net)</p> <p>○ 완료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출서류가 미비할 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필요시 현장점검 후 지원금 지급 할 수 있음 <p>○ 지원금 지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, 제작비용 지출 증빙은 전자 세금계산서와 입금확인 서류 (입금증 및 입금통장 사본) 제출을 원칙으로 함 - 지원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 사업자 폐업 또는 전매시 향후 재지원 불가
--

○ 기업 체크 및 요약사항

1	<p>- 「2019년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」은 <u>제조업체의 열악한 근로환경개선을 통한 제조기업의 이미지 호감도 개선 및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직장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</u>,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하여 지원합니다.</p> <p>① 공장등록기업으로 실제 제품 제조공정이 있으며, 기업의 주된 사업이 제조업인 기업 ② 공장마등록기업으로 건축물대장에 공장 또는 제조로 표기되어있으며, 실제 제품 제조공정이 있고 기업의 주된 사업이 제조업인 기업을 지원합니다. ※ <u>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으로 표기되어있으나, 실제 제조 공정이 없는 기업은 지원 불가</u></p>
2	<p>-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이며, 최근 1년 평균 상사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기업(휴·폐업 제외)이 신청 가능합니다. ※ <u>사업자등록 후 1년 미만, 상사근로자 수 5인 미만기업 지원불가</u></p>
3	<p>- 신규채용청년은 신청일 현재 거주지가 인천이어야 하며, 대표 및 임원과 직·간접적으로 연계되어있는 친인척 관계(직계존비속, 형제, 자매 등)에 해당하는 청년은 신규채용실적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. ※ <u>실적으로 인정 된 청년은 사업신청 후 6개월간 관외 주소지 이전이 없어야 함.</u> <u>점검을 통해 확인하며, 고의적·악의적으로 이를 어길 시 1년간 인천광역시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</u></p>
4	<p>- 신청기업 대표 및 임원과 직·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친인척 관계(직계존비속, 형제, 자매 등)에 해당하는 업체는 공사사공, 물품구매 예정 업체로 선정 할 수 없습니다. ※ <u>상기 내용에 해당하는 사업신청기업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업체와 계약 할 수 없음.</u></p>
5	<p>- 사업장 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. 지원받은 이후 1년 이내 사업장을 이전 할 경우 아래와 같이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되오니, <u>사업장 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은 신중을 기하여 지원하여주시기 바랍니다.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물품 : 관내이전에 한하여 허용, 관외 이전일 경우 3년간 인천광역시 각종 지원 사업에서 배제 (관외 이전시 타시도 관련 부서에 기업 명단 통보) • 공사 : 관내관외를 불문하고 3년간 인천광역시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 (관외 이전시 타시도 지자체 관련부서에 기업 명단 통보)

6	<p>- 3년 이내에 중앙부처 및 지자체사업 동일·유사분야 지원을 받은 기업은 신청이 불가합니다. ※ 단, 지원받은 금액이 5백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기관의 판단여하에 따라 지원 할 수 있음.(고지 필수)</p>
7	<p>- 「2019년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」 지원을 받은 이후, 3년간 중앙부처 및 지자체사업 동일·유사분야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.</p>
8	<p>- 사업 완료 후 3년간 지원받은 공사 및 물품을 지원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·관리·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(임의매각·훼손·분실폐하) 보조금 전액을 반환합니다. 예시)휴게실에 비치되었던 인마기가 대표실 및 사무실로 옮겨졌을 경우, 지원받은 이동식 에어컨을 매각한 경우 등 ※ 휴업의 경우 휴업기간을 제외하여 3년 산정</p>
9	<p>- 신청한 공사 및 물품이 근로자 공동사용이 아닌 기업 방문객, 바이어, 대표 및 임원 등 특정인을 위한 시설일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. ※ 기업 방문객, 바이어, 대표 및 임원 등 특정인을 위한 공사 및 물품지원 불가하며 적발시 전액 환수</p>
10	<p>-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기업은 「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」 현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. ※ 3년간 현판 및 출입구에 의무부착하여야 함.</p>
<p>- (해당기업) ■ 집진 및 공조시설 신청기업 확인사항 대기환경시설 인허가 및 관리에 문제가 없이 이를 관리하고 있으며, 생산라인 증설 및 배출량 증가로 인한 법적 필수사항이 아닌 근로자들의 작업장 환경 개선을 위해 신청 할 경우 지원합니다.</p>	
<p>- (해당기업) ■ 15백만원(VAT제외) 이상 공사 신청기업 확인사항 15백만원(VAT제외) 이상 공사는 반드시 건축공사업 또는 해당 공종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함을 확인하고 시공업체의 해당 업종 면허증 사본(전기공사업 면허, 실내건설업 면허 등)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 -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 확인 대한전문건설협회 www.kosca.or.kr 또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http://www.kiscon.net</p>	
<p>- (해당기업) ■ 우대지원 대상기업 가점사항 확인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청년친화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가족친화 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1석5조 청년프로젝트 참여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희망이음 참여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여성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인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인천시 청년인턴십 참여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뿌리경력형성지원금 참여기업</p> <p>※ <u>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항은 유효기간 내 한하여 인정하며, 각 해당사항 증명자료 제출시에만 가산점 부여</u> - 3개 이상 해당 : 5점, - 2개 이상 해당 : 4점, - 1개 이상 해당 : 3점 인천시 청년인턴십 참여기업</p>	